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1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2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7. 17.
- (3) 회 부 일 : 2025.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차규근의원안)

현 행	차규근의원안
☐ 배당소득(제17조) ☐ 의제배당의 범위 - <신 설>	☐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 의제배당의 범위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 다.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차규근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12)

☐ 개정안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자 하려는 것임.

☐ 소위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소시켜, 「상법」상의 배당재원을 확보해 배당하는 것¹⁾을 일컫음.

관련 「상법」²⁾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

1) 오종문.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2권제4호, 211p.

2) 「상법」

비금은 각각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과 이익배당액을 재원으로 향후 자본 결손 보전 필요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으로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이 제한되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감액배당’으로 일컫고 있음.

한편, 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³⁾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환급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최근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과 아울러 감액배당의 비과세 혜택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감액배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사되고 있음⁴⁾.

그런데, 이와 같은 감액배당에 대한 비과세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대주주 등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① 배당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②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및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자 하려는 것임.

참고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대하여만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정부안 소득령 §26의3)]

현 행	정 부 안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 (좌 동)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좌 동)

4) 감액배당 공시건수: ('22) 30건 → ('23) 34건 → ('24) 74건 → ('25.3) 118건
IBK투자증권

5) 오종문,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회계·세무 감사연구」 제62권제4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0.12.
오문성, 「조세정의 혼드는 감액배당... 이유는?」, 한국조세정책학회 기고문, 2025. 9.9.
시사저널, 「오너 일가 '세테크'로 떠오른 '비과세 배당' 세수 문제 없을까」, 2025.3.24.
매일경제, 「증시 밸류업 위한 감액배당... 일부 최대주주는 '편법 증여' 악용」, 2025.7.21.

□ ①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각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감액배당금액은 납입한 자본이상을 돌려받아 이익을 실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은 주주집단 전체로는 단순히 법인에서 투자 원본을 반환받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주주 간에는 발행가액이 높은 주주와 발행가액이 낮은 주주 간에 손익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가령 최초출자한 주식의 경우 감액배당금은 투자원본을 반환 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할증된 가격으로 출자한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이익의 일부를 실현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⁶⁾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주주가 감액배당을 수령하면 장부가액에서 차감⁷⁾하여 추후 법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만큼 증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도록 하면서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2022년 말 세법을 개정⁸⁾하였음.

6) 오종문,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회계·세무 감사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제62권제4호 p216 참조.. 2020.12.

7) 법인세제과-740, 2018. 6.22.

8)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개정안은 법인주주와 같이 개인주주에 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려는 것임.

둘째,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감액배당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자본준비금은 본래 결손 보전 충당을 목적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자본 항목에 구성되는데, 비과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소시키는 감액배당을 과도하게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자본부채비율(D/E, Debt-to-Equity Ratio) 지수가 나빠져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채권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차규근의원안의 감액배당 중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과세는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대하여 정부안은 ‘대주주 등⁹⁾’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일반주주에 대한 취득가액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것¹⁰⁾임.

감액배당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금액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해당 주주의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파악·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일반주주의 국내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가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9)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10)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다수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부재로 취득가액의 파악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¹¹⁾.

□ 한편, 차규근의원안의 ②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분은 원래 이익잉여금이었던 금액이 합병 등 과정에서 자본준비금으로 전환된 후 이를 재원으로 하여 금액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 등에 대해 과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 경우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것¹²⁾이므로 ①의 주식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11) 금융투자협회

12) 개정안은 개정문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